

보안심사대행기관 지정서

① 기관명	
② 대표자	
③ 소재지	
④ 업무범위	

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안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 (인)